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08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 박충권·권영진·유영하

엄태영 • 우재준 • 김용태

박성훈 • 고동진 • 김정재

이종배 · 김성원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산입되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을위해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담금을 '재화 또는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원자력안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에

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부담금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목적을 위탁업무 수행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으로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1조의2).

또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연체 최고한도의 하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용도에 원자력안전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제111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사전검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를 "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신고·등록·사전검토·교육훈련 또는 수출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 0호에 따른 원자력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핵물질 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제111조의3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하여"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태료"를 "과 대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분 석
-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 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5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 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했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 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 금 등) ① ----- 제1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 사능 방재 대책법 _ 제1조에 따 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 가 · 지정 · 승인 · 등록 · 사전검 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토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음 각 호의 자-----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 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 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 인가 · <신 설> 지정・승인・신고・등록・사 전검토 · 교육훈련 또는 수출 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 업무자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신 설>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원자력사 업자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

② ~ ④ (생 략)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생 략)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현행과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u>「국세기본법」 제47</u> 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 수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 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 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 2 | \sim | (4) | (현행과 | 같음) |
|---|--------|-----|------|-----|
| | | | | |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 - |
|---|
| |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③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는 부담금 납부 의무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 ① |
|---|
|---|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 방사능 방재 대책법 1 제45조 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 4. ~ 11. (생략)
-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 4. (생 략) <신 설>
- 5. ~ 8. (생 략)
- 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 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9. (생략)
- 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 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

| 3 | |
|-------------------|-----|
| | |
| | |
| 과태료(과태료의 | 가산금 |
| 을 포함한다) | |
| 4. ~ 11. (현행과 같음) | |
|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 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연 <u>구·</u>분석
-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
-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 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
 - 11. (현행 제9호와 같음)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 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 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

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관련 업무

<신 설>

<u>11</u>. (생 략) <u><신 설></u>

③ (생략)

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본경비

③ (현행과 같음)